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2. 1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2. 3. 홍지광 의원 외 12인
- 나. 회부일자: 2025. 2. 4.
- 다. 상정일자: 제273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2.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홍지광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 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동 조례 개정안은 2025년 2월 3일 홍지광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마포구 통합기금심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¹⁾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및 예수·예탁하는 창구로써 재정 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약 371억 원(2024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을 운용 중이며, 정기예금의 경우 예치 기간별(9개월, 12개월 이상)로 차등적인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금리 전망과 지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운용 중임.
- 마포구 통합기금심의회는 당연직 공무원 8명과 위촉직 구의원 2명 및 재정·회계 분야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용계획의 수립, 결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함.

1) <자료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제척(除斥) :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함

기피(忌避) :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회피(回避) : 재판관이나 서기가 소송 사건에 관하여 기피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스스로 그 사건을 다루지 않는 일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 * 위원 수 : 15명
 - 당연직 8명 / 위촉직 7명(구의원 2, 민간전문가 5)
- * 임기 및 연임 사항 : 2년(1회 연임 가능)
- * (주요 심의사항)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결산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운용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자체장이 회부한 사항

- 그러나, 통합기금 심의위원 중 민간전문가 2명이 우리은행 관계자이고, 현재 마포구 금고는 우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에 심의과정에서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통합기금심의회 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서울시와 10개 자치구²⁾에서 관련 조례에 기금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한편, 마포구 각종 위원회 운영의 기본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도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있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음. 이는 심의위원들의 회피 의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바, 강행규정으로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³⁾가 있었음.

2)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동작구, 용산구

3) 국민권익위원회 :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중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2023.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기본 조례 현황 >

구분	적용범위	이해충돌방지			해촉	임기, 연임 제한
		제척	기피	회피		
서울 마포구	기본조례에 따라 개별조례에 규정	○	○	△	○	3년 이내, 6년 초과 제한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따라서, 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2는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임.
- 그리고, 안 제12조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의 정합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다만,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이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종전 자치법규를 신뢰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적으므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것⁴⁾으로 사료됨.

4)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P159

- 아울러,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마포구 각종 위원회 운영의 기본 조례가 되므로, 동 조례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붙임 1

타 자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조문 규정 명시 : 11개 구

연 번	자치구 명	심의위원 수	심의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1	마포구	20명 이내 / 현 15명	X
2	서울시	12명 이내	O
3	강남구	15명 이내	X
4	강북구	15명 이내	O
5	강서구	15명 이내	X
6	관악구	15명 이내	X
7	구로구	12명 이내	O
8	금천구	10명 이내	O
9	노원구	12명 이내	O
10	도봉구	12명 이내	X
11	동대문구	10명 이내	X
12	동작구	15명 이내	O
13	서대문구	15명 이내	O
14	서초구	16명 이내	O
15	성동구	16명 이내	O
16	양천구	15명 이내	O
17	영등포구	12명 이내	X
18	용산구	15명 이내	O
19	종로구	15명 이내	X
20	중구	15명 이내	X
21	중랑구	15명 이내	X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중
- 기금 운용 24개 자치구 중 21개 자치구 기금 관련 위원회 운영, 3개 자치구 비(非)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대행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⁵⁾」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4.>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7.4.>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

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